

## VI. 주요 Q & A 모음

분 야	질 의	답 변
석면조사 대상 여부	- 시청 등 한 부지 내 건물수가 여러 개일 경우 연면적 500㎡ 적용 시 건물동 기준 500㎡인지, 아니면 여러 건물의 연면적을 합산해서 500㎡이상 인지?	- 시행령 제29조에서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조사대상이 결정되는 건축물의 면적산출은 건물동 기준으로 적용됨. 다만, 정부·공공기관·지자체 소유건물 등은 연면적에 상관없이 가급적 전체 건물에 대해 석면조사를 권함
석면비산정도 측정 및 감리인 지정 의무	- 법 시행 당시 이미 시행중인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비산정도측정 및 감리인 지정 의무가 있는지?  - 건축물 중 일부만 해체·제거할 경우 비산정도 측정 및 감리인 지정 대상 여부?	- 석면해체·제거작업 발주일이 '12.4.29이후인 경우만 비산정도측정 및 감리인 지정 의무 부과(발주일: 고용노동부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에 첨부되는 공사계약서의 석면해체 공사계약일 의미)  -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해체·제거할 경우 석면건축 자재면적을 기준으로 500㎡ 이상일 경우 비산정도 측정 대상, 800㎡ 이상일 경우 감리인 지정 대상이 되며, 분무재나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의 경우 면적과 상관없이 비산정도 측정 및 감리인 지정 대상임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 기준 준수	- 석면배출허용기준(0.01개/cm)을 언제부터 준수해야 하며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얼마부터 해당되는가?	- 석면해체·제거사업장 주변 배출허용기준은 4.29이후 모든 사업장에 적용(4.29 이전에 개시된 사업장 포함)되며, 석면건축자재 면적에 상관없이 석면해체·제거 업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장이 해당됨
석면비산정도 측정	- 법 제28조제2항 및 4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실시하는 석면비산측정과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석면비산정도 측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500㎡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해체·제거자는 석면비산정도를 측정하여 함(법 제28조제2항)

- 1 -

분 야	질 의	답 변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비산정도 측정 주체는?  -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에서 그 건물의 석면해체·제거 현장 석면비산정도 측정을 할 수 있는지?  - 석면해체·제거사업장 감리기관이 동일 사업장의 석면비산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가?  - 석면비산정도 측정 업체가 동일 사업장의 석면해체작업 후 석면농도 측정할 수 있는가?	- 위 내용과는 별도로 재개발·재건축·재정비 또는 석면건축 자재면적이 5,000㎡ 이상인 해체·제거 사업장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장주변 석면배출 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지도점검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석면비산정도를 측정하고 공개해야 함  - 법 제28조제2항 및 4항에 따라 석면비산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관이 다름  - 측정 의무는 석면해체·제거업자이나 직접 측정할 수 없으므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측정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 가능 ※ 석면조사를 한 기관이 해체·제거 작업은 불가(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4 제2항)  - 가능 (다만, 동일한 사람이 2가지 일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 동일 현장에서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석면비산정도 측정을 하는 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해체작업 후 석면 농도 측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석면안전관리법에서는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음 다만,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 2 -

문 야	질 의	답 변
“지체없이”의 단어의미	- 시행령 제38조 제2항 및 제3항의 “지체없이”의 의미	- ‘인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사용된 “지체없이”의 법제처 유권해석에 의하면 “지체없이”는 몇 시간 또는 몇 일과 같이 물리적인 시간 또는 기간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석면해체·제거 시 면적계산	- 복수의 건축물을 1건으로 묶어서 석면해체 할 경우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여 적용하는가?  - 석면건축자재의 면적 기준은 내·외장재(슬레이트 등)를 포함한 개념인가?	- 각 건축물의 대지(건축물대장에 대지로 기재된 토지부분을 의미)가 접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 대지가 일부라도 접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석면건축자재 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 - 다만, 대규모 또는 장기의 석면해체작업인 경우는 위 계산결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축정을 실시하는 것을 권장함(특히, 발주자가 공공기관 및 지자체인 경우)  - 건축물에 사용된 모든 건축자재를 의미함으로 내·외장재 뿐만 아니라 설비 등에 사용된 자재도 포함함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에 따른 조치	-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와 처리절차는?  -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가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가?	- 석면해체·제거 작업기간 동안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하여 제출받은 기관에서는 비산정도 측정결과를 매일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기준초과) 제출 → 작업중지(지자체) → 작업개선계획서 제출 → 보완 또는 승인(지자체) → 작업 재개 → 이행상태 확인(지자체) ※ 비산정도 측정결과 기준초과 시 ‘작업중지 명령’을 기다

문 야	질 의	답 변
		리지 않고 개선계획서 제출가능
	-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비산농도 측정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제출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는가?	-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할 경우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19호서식의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석면비산정도 측정방법	- 건축물 일부 공간을 해체·제거할 경우에도 “부지경계선”에서 시료를 채취해야 하는가? - 일부공간이면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  - 석면비산측정 시 폐기물반출구지점은 “작업장에서 지속적인 폐기물 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폐기물 반출이 한번만 되는 경우에도 석면비산정도를 측정해야 하는지?  - 지붕 슬레이트 해체 작업시(음압기 설치 없음) “음압기 공기배출구” 및 “작업장주변 실내” 축정을 하여야 하는지? 폐기물 반출구 지점은 어디가 되는지?	- 건축물의 일부 공간을 해체·제거하는 경우는 부지경계선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지경계선 시료채취는 면제 - 건축물 중 극히 일부공간의 석면해체·제거 작업이면서 외부로 석면이 비산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부지경계선의 시료채취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감리가 필요할 정도의 규모이면 부지경계선의 시료채취가 포함)  - 폐기물반출구로 석면이 비산 되어 누출되는 것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법 취지상 한번만 반출되는 경우에도 측정하는 것이 타당  - 지붕 슬레이트 해체작업 시 “음압기 공기배출구” 및 “작업장주변 실내”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측정의무가 없으며, 폐기물반출구는 슬레이트를 옮겨 싣는 지점이 폐기물 반출구 지점에 해당

문 야	질 의	답 변
	<p>- 시료채취 시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비교적 짧게 끝나는 경우 시료채취는 어떻게 해야 하나? (부지경계선 2,400㎦ 경우 4시간 정도 소요)</p> <p>-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비산정도도 측정 시 시료 채취펌프의 분당 유량은?</p>	<p>-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의 시료채취 유량은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채취하면 되고(고시 제6조), 고시에서 요구하는 유량에 못 미칠 경우 유량에 따른 계수 시야를 적용하여 분석하면 됨(고시 제7조제4항)</p> <p>- 환경부고시 제2012-79호(석면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제조에 따른 시료채취량을 준수하면 되고, 분당 유량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0.5L/분 ~ 16L/분 정도로 채취하면 됨</p>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종료 시점과 비산정도 측정	<p>- 석면해체 완료 후 석면폐기물을 완전 밀봉하여 보관하는 경우 석면비산 측정을 하여야 하는가요?</p> <p>- 작업이 없는 날 비닐로 보양되어 음압기를 가동하는 경우와 폐기물이 야적되어 있는 경우 측정지점은?</p>	<p>- 석면해체작업을 하는 도중에 폐석면을 야적하거나 보관하는 경우에는 폐석면 보관지점에 대한 석면비산 측정의무가 있지만,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완료된 후 반출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4호 나목 3) 및 9)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폐석면이 보관되고 있는 경우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환경부고시 제2012-79호(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보관지점에 대한 측정의무는 없다고 하였습니다.</p> <p>- 고시 별표에 있는 모든 지점에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음압기 공기배출구와 폐기물보관지점만 측정하면 됨</p>

문 야	질 의	답 변
	<p>- 여러대의 음압기 배출구를 한지점으로 모은다면 각 배출구를 대상으로 측정해야 하는가?</p> <p>- 음압기 배출구를 2층 이상 건물의 창문에 내는 경우에는 어떻게 농도를 측정해야 하는가?</p> <p>-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석면비산농도를 측정할 경우, 비가 와도 건물 외부의 석면비산 농도 측정해야 하는지?</p>	<p>- 여러대의 음압기 배출구를 한지점으로 모은다면 배출구가 모여진 지점에서만 측정해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연결부위에서 석면이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p> <p>-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 방법 (환경부고시 제2012-79호)」 별표1 및 별표2에 따라 음압기 지점의 경우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합니다.</p> <p>-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석면비산농도 측정은 매일 실시하여야 하는데, 계속적인 비로 인해 측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건물 외부의 석면비산 농도 측정은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음압기 지점은 매우 중요한 지점이므로 측정 장비가 비를 맞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한 후 반드시 측정하여야 한다.</p>
석면해체·제거 감리	<p>- 법 시행일 당시 이미 공사중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또는 법 시행일 이전 석면해체·제거 공사계약은 되었으나 실제 공사가 법 시행일 이후 시행될 경우 감리인 지정 의무는?</p> <p>- 발주자가(A)가 B에게 건축물 철거 건설공사 전체를 발</p>	<p>- 없음. 법부칙 제3조에 따라 법 시행 후 ‘발주’하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해 감리인지정의무 부과(‘발주’란 석면해체·제거작업 공사계약일을 의미하며, 고용노동부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에 첨부되는 공사계약서의 계약일을 의미)</p> <p>- 감리인 지정의무는 석면해체·제거 발주자에게 주어지며,</p>

문 야	질 의	답 변
	<p>주하였고, B는 C에게 석면해체·제거 작업만 하도록 준 경우 석면해체·제거 발주 주체는 누구인가?</p> <p>- 위 경우 감리인 지정 의무는 주체는 누구이며, 또 발주일은 어떤 계약이 발주일이 되는가?</p>	<p>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최초 건설공사의 계약일이 발주일에 해당(발주주체 : A)</p> <p>- 발주자(A), 계약발주일은 A와 B의 계약일</p>
석면해체·제거 감리	<p>-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감리인 및 감리원의 자격 기준은?</p> <p>-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환경부고시 제2012-80호) 별표1의 '경력' 인정 범위는?</p> <p>- 고시 부칙 조항에 의거 '12.12.31 이전에 감리계약이 체결된 경우 감리기간이 12.31을 초과할 경우 12.31이후엔 감리원 교육(35시간)을 받은 사람으로 감리원을 교체해야 하나?</p> <p>- '12.7.23부터 시행하는 감리원 교육을 받고 일반감리원의 자격이 되는 자도 고급감리원의 직무를 수행할</p>	<p>- 관련법에 의한 석면조사기관,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종합 또는 건축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된 자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별표1의 자격을 갖추고 감리원 교육을 이수한 자(다만, '12.12.31까지는 석면조사자 교육 또는 석면해체·제거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인정)</p> <p>- 해당 분야에서 석면관련 업무를 실제 수행한 경력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면 되겠고, 단순히 관련업종에 근무한 경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p> <p>- 고시 경과규정에 의하여 일반·고급 감리원의 자격이 되어 '12.12.31이전에 감리계약이 체결된 경우 12.31 이후에도 기 체결된 계약기간 동안 감리원으로 활동할 수 있음</p> <p>- '12.12.31까지는 감리원교육을 이수한 일반감리원이 고급감리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12.12.31</p>

문 야	질 의	답 변
	<p>수 있는지?</p> <p>- 감리인 자격기준에서 석면관련 경력인정 시 경력 분야와 경력인정 방법은?</p> <p>- 감리원이 2개 이상 감리인에 소속될 수 있는지?</p> <p>- 고급감리원이 일반감리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p> <p>- 부칙2조 경과규정에 따른 감리원 자격은 일반감리원과 고급감리원 자격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p> <p>-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시행령 102조에 따라 책임 감리가 면제되는 기관도 석면해체·제거 감리인을 별도로 지정해야 하는가?</p> <p>- 감리원에 준하는 자격 및 능력을 가진 공무원, 책임 감리 면제기관의 직원이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지?</p> <p>- 발주자 소속의 석면조사기관을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으로 지정 가능한가?</p>	<p>이전에 고급감리원으로 계약 체결된 경우 계약이 종료될 때 까지 고급감리원으로 활동 가능</p> <p>- 석면조사, 석면해체·제거, 석면채취 및 분석 등 석면관련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을 실제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 제시</p> <p>- 없음</p> <p>- 가능</p> <p>-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자는 '12.12.31까지는 일반 및 고급 감리원 구분 없이 감리업무 수행 가능함</p> <p>-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고시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감리인을 별도로 지정해야 함.</p> <p>- 수행불가</p> <p>-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을 지정하는 것은 석면해체작업 전반을 철저히 관리·</p>

문 야	질 의	답 변
	<p>- 감리인 지정현황(변경) 신고 및 공사 감리완료보고는 누가,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p> <p>- 감리원 교육기관은 어디이며, 교육일정은 어떻게 되는가?</p> <p>- 석면해체작업 감리원 기준 고시 부칙에 따라 석면조사 12.31까지 감리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가?</p>	<p>감독하기 위함이며,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은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등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발주자의 이익에 상반 되더라도 석면해체작업자에게 석면해체작업의 시정·중지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하는 바, 실질적인 감리활동을 위해서는 발주자 스스로 또는 소속기관을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으로 지정하는 것 보다는 외부기관으로 하여금 감리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법 취지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 됨.</p> <p>- 발주자가 '감리인지정현황신고서'를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시 전까지(검토를 위해 가능한 7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며, 감리완료 보고는 발주자가 '공사 감리 완료보고서'를 석면해체·제거 완료 후 15일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p> <p>- '12.6월말 현재 교육기관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과 산업 안전보건교육원에서 7.23~10.26까지 7차에 걸쳐 매주 시행하고 있으며, 추가 교육일정은 향후 별도 공지 예정</p> <p>- 고시 부칙조항 경과규정은 '12.12.31까지 적용되며, 그 이후에는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 감리원 교육 35시간을 이수해야만 감리원으로 활동할 수 있음</p>

문 야	질 의	답 변
	<p>- 감리 대가 산출 기준 또는 근거는?</p> <p>- 공사감리 완료보고 시 발주청에서 감리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내용은 어느 정도 인지(감리인의 활동 영역 및 감리 내용에 관한 내용 지정 등)?</p> <p>- 감리인 지정을 해야 하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감리인을 지정하지 않고 진행시 어떤 법적인 강제 조치가 있는지?</p> <p>- 석면해체작업 감리의 시작되는 시점과 종료되는 시점은 언제인지?</p>	<p>- 감리 대가는 별도로 고시할 계획은 없으며, 엔지니어링단가 기준, 물가 정보를 참고하여 산정하면 됨</p> <p>- 감리인은 고시 제3조(업무범위)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공사감리 완료보고 시에 감리인으로부터 당해공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내역(감리보고서)를 받으면 됨</p> <p>- 석면안전관리법 제 47조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p> <p>- 석면해체작업에 대한 감리는 석면해체·제거작업 뿐 아니라 그 현장 준비 과정까지 이루어져야 하므로, 비닐보양을 하는 시점부터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완료된 후 반출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4호 나목 3) 및 9)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폐석면이 보관되는 것을 확인하는 시점까지 이루어져야 함</p>
<p>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물량 증가 또는 추가 계약 시 발주 계약일 적용 시점</p>	<p>- 재개발·재건축 사업현장에서 석면 해체·제거를 수반하는 건설공사를 법 시행이전 발주받아 공사를 하던 중 법 시행 후 추가로 석면 해체·제거 물량이 늘어나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발주계약일은 어떻게 적용되는가?</p>	<p>- 계약변경의 사유가 작업기간 또는 금액 변동일 경우 최초 계약일을 발주계약일로 하지만, 석면 해체·제거 물량의 증가 등으로 계약이 변경될 경우 추가로 계약된 물량은 변경계약일이 발주일이 됨</p>

문 야	질 의	답 변
		<p>- 「석면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제30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주하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이나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나 최초계약이 법 시행일 이전이라도 석면해체·제거공사 도중에 최초계약서 상의 공사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건축물을 해체·제거하게 되는 경우에는 새롭게 해체·제거 대상에 포함되는 건축물은 제30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임</p>
<p>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변경 및 교육</p>	<p>-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 안전관리인 지정·변경 시점은 언제이며, 지정·변경 시 석면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지정 가능한가?  - 교육 위탁기관 지정현황과 지정 후 언제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가?</p>	<p>- 건축물 소유자, 해당 건축물 점유자 또는 관리자, 석면조사기관에 위탁하여 지정할 수 있음(위탁 시 위탁계약)  -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작성 후 건축물석면조사결과 제출 때 지정(변경 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해야 하며, 지정·변경 후 교육 이수 가능  -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국립환경인력개발원과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 안전관리인 지정·변경 후 1년 이내 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함</p>
<p>석면 함유 가능 물질</p>	<p>- 석면허용기준 중 최종제품으로 유통되는 판석(바닥보도 또는 건축마감용)은 어디에 해당하는지?</p>	<p>- 최종제품으로 유통되는 판석, 경계석, 조경석등의 석면허용기준은 “표면에 석면이 노출되지 않을 것”입니다.</p>

문 야	질 의	답 변
	<p>-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수입 시 마다 신고해야 하는지?  - 수입물질 중 석면분석 결과가 0%이면 추후 수입 시 면제 가능한지?</p>	<p>-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의 경우 수입 시 마다 석면조사 분석을 실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석면조사분석은 수입 시 마다 실시해야 하며, 이전 수입시의 분석결과에 상관없이 수입 시 마다 분석을 실시해야 합니다.</p>